

## 10.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281호 1998. 7. 13

###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구조조정과 전문화를 지원하고, 실업해소를 위하여 국내근로자를 해외 건설현장에 송출한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등 정부시책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건설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의 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모든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공사실적과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나. 건설업에 관한 자산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양수인의 시공능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다른 공동수급인이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관리·조정하고, 시공상의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에 합산하도록 함.  
 라. 시공능력의 공사시기를 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등을 감안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함.  
 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퇴직공제 불입금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인력을 해외건설 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금액을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할 수 있도록 함.

주택회보